

# 2009년도 경기도올림픽연수원 콘텐츠 개발 사업

- 경기교육정책 과정 원고 -

◆ 차시 정보

과정명	경기교육정책
영역 분류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운영
차시번호 및 차시명	3.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보장 사례

◆ 집필자 정보

이름	배경내
소속	인권교육센터 '들'
직위	상임활동가
연락처	02-365-5412

◆ 변경 정보

순서	작성일	작성 내역	비고
1	2009. 12. 13.	초안	
2	2009. 12. .	내용 수정	

## 들어가기(생각열기)

이번 차시에서는 학교생활 안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탐색해 봅니다.



☞ 이 사진이 화면에 나올 수 있나요?

이 밥상의 이름은 학생인권 밥상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학교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꼭 보장되어야 할 권리에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에게 선물하고픈 권리를 3가지만 떠올려 요리 점시에 담아 이 밥상을 풍성하게 채워 봅시다.

예를 들어 한 선생님은 “똥 싸고 싶을 때 똥 쌀 권리”를 학생인권 밥상에 올려주셨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 수에 비해 화장실 개수가 턱없이 모자라 쉬는 시간이면 학생들이 길게 줄을 지어 기다렸다가 결국 볼일도 보지 못하거나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가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제때 가지 못하다 보니 변비에 걸리는 학생도 늘어나고, 수업시간 중 가고 싶어도 교사의 허락을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학생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필요한 만큼 화장실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적어도 화장실만큼은 허락받지 않고도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권리를 가장 우선 선물해주고픈 권리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누려야 할 권리는 무궁무진합니다.

아래 열쇠말들은 학교생활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의 목록들을 뽑아내는 데 지침이 될 만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권리 요리를 준비하셨습니까?

자기결정	차이	폭력	생각	표현	모임	사생활	참여
일	복지	침	배움	일	문화	정보	별
							안전

☞ 이 단어들이 방송할 때 화면에 나오거나 그럴 수 있는지요?

## 들어가기(함께 생각해볼 문제)

[학습주제]

1. 학생의 '문제행동'과 학교문화
2. 학생인권 사례 분석
3.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지도 방안

이번 차시에서는 학생을 인권의 주체로 바라볼 때, 학교생활규정과 생활지도의 방향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학교생활에서 주로 '문제행동'이라고 분류되는 행동들의 발생 원인을 학교문화와 연결시켜 살펴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생활지도 방안을 모색해봅니다.

## 알아보기

1. 학생의 '문제행동'과 학교문화

00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학생 징계 사유

- 불량 서클에 가입한 자
- 무단가출한 자
-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
- 집단행동을 선동했거나 모의에 가담한 자
- 인터넷상에서 상대 비방, 명예훼손, 거짓 정보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반항하거나 불손한 언행을 한 자
- 이성교제가 청소년 사회 윤리에 어긋난 자
- 무허가 집회를 주도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
- 학교장의 허락 없이 정당이나 정치관련 단체에 가입한 자
- 교내에서 정치 선동을 한 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학교의 명예를 심히 손상시킨 자

☞ **고등학교 규정이 화면에 나올 수 있는지요?**

경기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입니다. 학생을 징계할 수 있는 사유로 위와 같은 것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습권의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징계 사유들을 꼼꼼 뜯어보면,

△학생에게도 보장되어야 할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고 있는 사유 △의미가 모호하여 자칫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유 △징계가 아니라 교육적 지원과 보살핌이 이루어져야 마땅한 사유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단행동을 살펴봅시다. 집단행동에는 설문조사, 전단지 배포, 서명 조직, 학교장과의 면담 요구, 수업 거부, 캠페인, 집회 등 다양한 행동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학생의 표현의 자유,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권이라는 이름으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행동들입니다. 집단행동을 원초적으로 제한하는 일은 학생의 인권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불량 서클은 어떻습니까? 학생자치활동 중 하나로 보장되고 있는 동아리활동이 학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약받고 동아리 설립 자체가 원천 불허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불량’을 판단하는 잣대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권을 지닌 학교의 자의적 판단에 좌지우지 당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교 질서를 명백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다양한 모임을 만들고 활동할 자유는 학생인권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가출이나 음주는 어떻습니까? 가출이나 음주에 대해서는 학교가 해당 학생을 정서적으로 보살피고 필요한 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문제적 환경에서 빚어진 행동에 처벌만을 가하는 것은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지 못한 채 문제행동만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처방입니다.

이처럼 학교생활규정에는 구체적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이 무수히 열려 있습니다. 학교문화 자체가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뿐, 학생을 인권의 주체로, 학교 구성원 가운데 하나로, 시민의 한 사람이자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할 학습자로서 온당하게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입니다. 학교와 학생의 관계는 폭압적 군주와 신민의 관계여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학생 위에서 군림하고 호령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와 학생의 관계는 민주사회와 시민의 관계여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텃밭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학교생활규정에서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조항들을 가려 뽑는 한편,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면 손질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권친화적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 2. 학생인권 사례 분석

학생인권은 학교생활규정과 같은 명문화된 규정에 의해서만 제약되지 않습니다. ‘학생에게도 인권이 있다’라는 문장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학생인권옹호관’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아래 사례가 인권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하시겠습니까? 사례별로 학교가 취한 조치가 인권침해인지 여부,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적어봅시다.

사례	진정 내용	인권침해 여부	판단 이유
----	-------	---------	-------

1	우리 학교에서는 교복 가슴팍에 이름표를 박음질해서 달고 다니게 합니다. 우리가 죄수도 아닌데 왜 이름표를 박고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다( ) / 아니다( )	
2	우리 학교에서는 정독실이란 이름으로 성적 몇% 이상에 들어가는 학생에게만 자습공간을 제공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모아서 따로 지원하는 건 차별 아닌가요?	이다( ) / 아니다( )	
3	복도를 지나가다 보니 한 선생님이 후배 하나를 엄청 패고 있더군요. 제가 그만하시라고 하면서 매를 붙잡았는데 저까지 때리더라고요. 이튿날 교장실에서 저를 부르더니 선도위원회도 열지 않고 곧장 퇴학처리를 하겠다고 하시네요.	이다( ) / 아니다( )	
4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걱정되는 마음에 점심시간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부장 선생님이 다짜고짜 학교에 있는 동안은 휴대폰 사용이 안 된다면서 빼앗아가시는 거예요.	이다( ) / 아니다( )	
5	두발규정이 갑자기 뻣세졌어요. 그래서 학생회에서 두발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불러서는 호통을 치시고 설문조사지까지 압수해가셨어요.	이다( ) / 아니다( )	
6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급식비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급식비 미납자 명단을 칠판 앞에 붙여두고서는 빨리 내라고 공개적으로 독촉하시더라고요.	이다( ) / 아니다( )	
7	우리 담임선생님은 글쓰기 숙제로 일기쓰기를 자주 내주세요. 일기장을 내면 읽어보시고 답장도 써주시니까 괜찮았는데, 그저께는 친구들 앞에서 잘 쓴 글이라며 제 일기를 읽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이다( ) / 아니다( )	

☞ 이 일곱 사례가 차례 대로 화면에 뜰 수 있는지요?

사례 일곱 가지 모두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인권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리해봅시다.

[사례 1]은 이름표를 고정 부착시키는 조치가 인권침해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신상에 관한 중요한 개인정보 가운데 하나이지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어느 정도까지 자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정보의 주인에게 맡기는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표를 교복에 고정 부착시키는 조치는 이름표를 다는 일이 필수적이지 않은 공간에서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는 행위인 만큼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표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위해 부착될 필요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봅시다.

[사례 2]는 성적 우수자에게만 특정 공간을 개방하고 지원하는 일이 인권침해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배움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교육시설이나 지원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성적이나 성별, 장애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거나 우수자를 우대하는 일은 차별에 해당합니다. 단, 배움이 모자란 사람들에게 추가로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일은 교육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차별에 해당하지 않겠지요.

[사례 3]은 교사 체벌을 중단시키기 위해 매를 붙잡은 행동이 불손한 행위인지 여부, 그리고 이를 이유로 퇴학처분이란 징계를 내린 것이 정당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을 때 다른 학생이 개입하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의 기준으로 보면 이 교사의 행동은 정당한 '지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이 교사에게 한 행동'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폭력을 중단시킨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행동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는 일은 부당한 조치가 됩니다. 게다가 이 학교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밟고 학생의 변론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퇴학처분을 내린 만큼, 이 사례는 징계의 사유나 절차 모두에서 학생인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합니다. 교사의 매를 붙잡는 행동을 불손하다 따지기 전에 학생 지도가 교육과 인권의 잣대에 충실하게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사례 4]는 학교 안에서 휴대전화 소지나 사용을 일괄 금지하는 일이 인권침해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은 통신의 한 방법으로서 학생에게도 금지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다만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긴다면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 사례의 경우 수업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한 것인 만큼 과도한 제한이라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학생이 느닷없다고 느낀 것은 이 학교에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규정이 민주적으로 마련되고 학생들에게 충분히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학생이 사용한 이유를 확인도 하지 않고 곧장 압수조치까지 취한 것은 교사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영화관에서 휴대전화가 울리거나 촬영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고 해서 관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소지 검사를 하지는 않듯이, 학생들에게도 휴대전화 소지나 사용을 일괄 금지하기보다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례 5]는 두발규정의 일방적 개정과 설문조사라는 학생의 의견 조사 활동을 가로막은 조치가 인권침해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두발의 자유는 모두에게도 그러하듯 학생에게도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발 제한 규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두발의 길이나 형태를 제한해야 할 구체적이고 충분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사유가 타당하더라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함께해야 합니다. 이 학교의 경우 학교가 정당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두발규정을 개정한 만큼 학생인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학교 안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멈추지 않습니다.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서 벌인 설문조사를 가로막고 설문지까지 강제 회수한 것은 개정된 규정에 대한 동의와 준수를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행위인 만큼 학생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 6]은 급식비 미납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가 인권침해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도, 그래서 급식비를 내지 못했던 것도 부끄러워 할 일은 아닙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사회의 자원이 그만큼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만큼 부끄러울 것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난을 만든 사회겠지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들고 있고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의 학생들에게는 급식비 미납 사실이 남에게 알려지는 일이 수치심을 갖게 합니다. 아파트 입구에 관리비 미납자 명단이 버젓이 나붙어 있는 것이, 전력회사에서 ‘전기세 미납자 집’이라는 딱지를 대문 앞에 붙여놓는 일이 상상하기 힘든 일인 것처럼 학생의 가정형편이 일방적으로 알려지는 일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사례 7]은 일기장 검사와 공개 낭독이 인권침해인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담임교사는 좋은 의도에서 일기쓰기를 숙제로 내주어 검사했고 좋은 글의 예시로 학생의 일기를 공개 낭독했습니다. 그렇지만 담임교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기장을 검사하는 행위는 학생의 사생활과 내면을 들여다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검사하는 교사의 생각을 미리 짐작해 거짓된 마음을 털어놓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염려도 있습니다. 더구나 당사자의 동의도 얻지 않고 일기 내용을 여러 사람 앞에서 낭독하는 일은 사생활에 대한 침해임에 분명합니다. 일기장 검사 말고는 다른 글쓰기 연습은 없을까요? 일기를 낭독하더라도 학생의 동의를 먼저 받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앞서 살펴본 일곱 가지 사례들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인권 문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인권의 현미경으로 학교생활 안을 들여다보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권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감수성을 버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 생각 나누기

학생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학생인권, 특히 학생의 자유 보장에 많은 이들이 주저하게 되는 밑바닥에는 다음 세 가지 생각이 깔려있습니다. 하나는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권을 전면 보장하기에는 위험하다는 것, 둘은 학생에게는 자유보다는 책임과 의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셋은 면학분위기 조성 및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공부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물건이나 정보, 행동 등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는 사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지요.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EBS 지식채널e에서 방영된 <웰컴 투 벤포스타>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인에 자리잡은 어린이/청소년공동체 ‘벤포스타’의 실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스스로의 주인이라는 믿음, 삶의 기쁨이 충만할 때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자신을 훈련하도록 만든다는 발견, 자유로운 시민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다는 원칙은 벤포스타만의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청소년은 미성숙한가, 미성숙해지는가



우리 학생들이 미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을 존중받고 행사하는 기회야말로 학생을 성숙으로 이끌 수 있기에, 책임의 반대말은 무책임이고 질서의 반대말은 무질서이지 자유가 아니기에,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도 가장 잘 기를 수 있기에, 자유의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사회라야 사람들은 자기 책임을 스스로 깨닫고 실천할 내적 동기를 갖게 되기에, 학생인권을 지금 바로 보장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생활이 즐겁고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가 형성될 때 공부에 대한 몰입이 가능해지는 만큼, 학생인권은 면학분위기 조성의 필수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교육의 목표는 민주시민의 양성입니다. 인권을 생활속에서 경험하고 학습할 때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학교문화를 재구성하는 일은 인권에 대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리하기**

이번 차시에서는 학교가 문제시하고 금지하고 있는 학생 행동들 가운데 학생의 인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따져보면서,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교육현실과 아동권리 상황을 검토하면서 “학교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학교의 교칙이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자주 일어나는 학생인권 문제 상황들을 들여다보면서 인권을 잣대로 바람직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흥미로운 교육적 도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 보장을 주저하게 만드는 인식을 살펴보면서, 학생인권을 보장할 때 학생들이 더 성숙할 수 있고 책임감도 기를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권에 대한 성숙도는 나이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미성숙하다면 더 많이, 더 빨리 인권의 경험에 노출시켜 주어야 합니다. 권리를 행사하고 민주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인권에 대해 더 잘 배우고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합시다.